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연구윤리규정

2018. 3. 20.

대한임상미생물학회는 미생물에 의한 인간에서의 감염 및 그 병원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회원 상호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규정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회원들의 학술활동 중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각 회원은 연구 활동 중 정직성, 진실성,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조 연구자의 윤리 규정

-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의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명된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는 것,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병력번호, 이름,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논문 제출 시에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임상시험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2)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의 연구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08. 2)의 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명시하도록 하며, 논문 제출 시 해당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3) 연구자는 모든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 및 정확성의 기본 원칙을 추구하고,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각종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윤리규정에서 취급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

- 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7) 위에 언급한 행위 외에도 대한임상미생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단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이차게재로 간주하여 허용한다.

- (1)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 문서로 동의한 경우
- (2)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한 경우
- (3) 내용과 결론이 같은 경우(두 번째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으로 하는 것을 권장함).
- (4)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다르고, 이차 학술지 발행일자가 1주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 (5) 두 논문의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제3조 윤리 규정 실행 방안

- (1) 대한임상미생물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2) 대한임상미생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게재 시에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주의, 제재에 관한 문구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을 삽입한다.
- (3) 대한임상미생물학회는 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인지, 신고 접수 및 조사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1) 윤리위원회는 대한임상미생물학회장이 임명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 (3) 윤리위원회는 대한임상미생물학회에 관련된 윤리규정 위반 사례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를 담당한다.
- (4)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1)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고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피조사자가 근무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3)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근무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본 윤리규정 제2조에서 언급된 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의 장이나 대한임상미생물학회장에게 이를 제보하도록 한다. 제보의 방법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익명을 통한 제보도 접수하여야 한다. 기명으로 접수된 경우 접수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1)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부정행위 조사의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장이 수행하며, 신고 접수일 또는 부정행위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 (2)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최종적으로는 조사결과보고서의 형태로 보고토록 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에게 보고 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조사자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조사결과의 보관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단,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 (1)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 결과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학회 소식지 또는 의협 소식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3) 윤리위원회에서는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윤리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 1. 연구 윤리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해당사안에 대한 경고문을 발송하고,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에 1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 2. 연구 윤리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대한임상미생물학회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에의 투고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이외에 대한의과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의 관계기관에 위반내용에 대해 통보한다.

참고자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2007.02.08)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대한의과학술지편집인협의회(2008.1.31)